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23일, 정희용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24.8.27.)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24.11.2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차 안전조정위원회(2024.11.2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희용의원)

쌀은 생산량 감소보다 수요량 감소폭이 더 큰 구조적 공급 상황임. 이러한 공급과잉은 쌀값 변동성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그간 수확 이후 반복된 시장격리 및 정부매입은 높은 영농 편의성을 가진 쌀 시장의 수급안정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과학적인 수급 예·관측 시스템에 기반하여 벼 재배면적을 사전적으로 감축하는 ‘사전적·선제적 쌀 수급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쌀 생산량 관측과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확기 이전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운용하여 연중·선제적 수급 안정정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쌀 외에도 밀, 콩 등 주요 양곡을 폭넓게 지원하여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쌀 유통업 중심의 육성정책을 밀, 콩 등 양곡의 유통·가공·판매 등 산업화와 양곡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국산 양곡의 소비를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개정안은 쌀 생산의 과잉 및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한 쌀 가격 하락에 대하여 정부로 하여금 의무적 시장격리, 양곡의 시장가격과 기준 가격 간의 차액 보전, 양곡의 선제적 수급조절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미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타 개정안과 유사하므로,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다만, 추가적인 내용으로 ① 공공비축양곡 비축 물량의 확대, ②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공공비축양곡 비축·운용 비용 지출 등을 규정하고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안전조정위원회 심사내용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 주철현)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조정안으로 의결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7.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